



대구대학교와 수성구보건소의

상호교류 협약서



수성구보건소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대구대학교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 간호학과 간의 상호 협력 및 유대 강화를 통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갑” 과 “을” 의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조(협력내용)

- 가. 간호학과 학생의 현장 실습지도
- 나. 보건소의 지역 주민 대상 보건 프로그램 지원 협조

제3조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(갑의 의무)

1. “갑” 은 “을” 의 학생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실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2. 실습과정 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“을” 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

제4조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(을의 의무)

1. “을” 의 학생은 실습기간 중 “갑” 의 실습지도자의 지시를 준수한다.
2. “을” 의 학생은 실습과정 중 알게 된 “갑” 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3. “을” 의 학생이 실습 중 부주의, 과실 또는 고의로 “갑” 의 재산에 피해를 가했을 때는 “을” 은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한다.

4. “을”의 학생이 본인의 부주의로 실습 중 도난을 당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“갑”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5. “을”은 “갑”의 요청이 있을 때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에 협조하도록 한다.

제5조(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협력) 현장 실습 지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“갑”은 담당자를 지정하고, “을”은 이를 현장실습지도자로 위촉한 후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 협의하도록 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
제7조(효력) 본 협약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며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1개월 이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4. 30.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 장 홍 덕 톨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수성보건소

소 장 홍 영 숙

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(중동)